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면적
지원특별법시행령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며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‘국토외곽 먼섬’의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「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특별법」이 제정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국토외곽 먼섬 지정 및 공고

1) 국토외곽 먼섬 추가 지정 기준(제2조)

-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까지의 거리가 10km 이하이고, 육지까지의 항로거리*가 50km 이상인 섬

*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로

-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까지의 거리가 10km 이하이고,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*이 없거나 운항 빈도가 낮아 섬 접근성이 낮다고 행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섬

* 「해운법」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

2) 국토외곽 먼섬의 명칭 및 위치 등 현황을 관보에 공고(제3조)

나.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

1) 종합발전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 규정(제4조)

- ①사업의 명칭 변경, ②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, ③타법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이 변경·폐지된 경우

2)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및 제출(제5조)

-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시·도지사가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하여 3월 31일까지 통보
- 관계 시·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

다. 국토외곽 먼섬의 각종 지원근거 마련

1) 국고보조율 규정(제6조)

- 기준보조율이 80% 미만인 경우, 사업의 규모·필요성·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80%까지 보조율을 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

2) 지방교부세 특별지원(제7조)

-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때, 종합발전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

3) 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(제8조)

- 법에서 규정한 대피시설, 비상급수시설 외에 민방위 경보시설, 비상용 전기·통신시설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

4) 기반시설 설치(제9조)

- 법에서 규정한 교통, 수도·전기, 문화·체육, 복지시설 설치 외에 의료, 경관개선, 상업, 배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

5) 생활인구 확대 지원(제10조)

-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생활서비스 개선·확충, 교통·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,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입법예고 전

라. 기 타 :

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국토외곽 먼섬의 기준) 이 영은 「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까지의 거리가 10km 이하이고, 육지까지 최단 항로(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의 항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거리가 50km 이상인 섬
2.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까지의 거리가 10km 이하이고,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(「해운법」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)이 없거나 운항빈도가 낮아서 섬 접근성이 낮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섬

제3조(국토외곽 먼섬의 현황 공고)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의 명칭 및 위치 등의 현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제목) 법 제5조제7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

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사업의 명칭 변경
2.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발전계획(이하 “종합발전계획”이라 한다)에 반영된 개발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
3.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·폐지됨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

제5조(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을 관할하는 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시·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국고보조율)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율(이하 이 조에서 “지원보조율”이라 한다)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(이하 이 조에서 “기준보조율”이라 한다)이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조율에 해당 사

업의 규모·필요성·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, 그 합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. 다만, 기준보조율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.

제7조(지방교부세 특별지원)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지방교부세법」 제6조·제9조·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사업시행을 위한 지역현안 수요의 발생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.

제8조(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) 법 제8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민방위 경보시설
2.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·통신시설
3.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

제9조(기반시설 설치 등)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원격 교육, 의료 서비스, 업무 등을 위한 디지털 정보 통신시설

2.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시설

제10조(생활인구 확대 지원) 법 제12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

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·확충 사업
2. 교통·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사업
3. 일자리 창출,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사업
4.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
5.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사업
6.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업
7.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